

제주지방법원 2020. 7. 14 선고 2020나11551(본소), 2019나13605(반소) 판결

[공사대금등 · 선급금반환 청구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20. 7. 14 선고 2020나11551(본소), 2019나13605(반소)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9. 6. 27 선고 2018가단3105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주식회사 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창곤, 안흥모

변론 종결 2020. 5. 19.

판결 선고 2020. 7. 14.

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가단3105(본소), 2019가단51613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32,193,4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원고는 피고에게 7,888,5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당심의 심판범위

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, 피고는 반소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였다.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.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,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.¹⁾

2. 기초사실

○ 피고는 2017. 8. 21.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일원의 D공사 오수관로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87,922,530원(부가가치세 포함), 토공사를 대금 80,456,410원(부가가치세 포함)에 도급하였다.

○ 피고는 2017. 9. 14. 원고에게 선급금 2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○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. 9. 29. 피고에게 "D공사 중
오수관로공사의 계약 포기 건"이라는 제목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
발송하고, 공사를 중단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의 3, 을 제1호증의 1, 2,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3. 피고의 주장 요지

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금은 12,111,448원이다.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
20,000,000원에서 위 기성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7,888,552원을 반환하여야 한다.
(피고는 제1심에서 "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는 그 전부를 철거한 후
재시공하여야 했는바, 결국 원고는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선급금
20,000,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."고 주장하였으나, 항소취지 및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
제1심에서의 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.)

4. 판단

갑 제1호증의 6, 을 제5호증의 각 기재, 당심의 E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(을 제5호증과 같다)
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E공제조합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원고의 기성률을
11.3%(시공되지 않은 토공사 중 포장공사, 부대공사는 제외)로, 그에 상응하는 기성대금을
12,111,448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의 기성률 및 기성대금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고려
없이 시공된 오수관로의 길이를 전체 오수관로의 길이로 나누는 방식(= 시공된 오수관로 길이
170m/전체 오수관로 길이 1.5km)으로 대략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,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
어렵다(더욱이 위 기성대금은 직접공사비의 합계에 기성률을 곱한 것이어서 간접비용이나
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, 위 기성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성대금은
12,111,448원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).

그 밖에 을 제3호증,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
기성대금이 선급금액에 미달한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
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5. 결론

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현룡

판사하승수

판사서영우

1)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는데(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서는 제외됨), 본소의 항소심 사건번호가 뒤늦게 부여되었다.